

2025 경기도체육육성지원 사업 공고

1 목 적

- 다양한 유형의 체육육성을 위한 개소별 맞춤형 지원 및 참여자 만족도 제고
- 경기도민의 스포츠 참여 활동과 이에 따른 체육 저변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을 도모

2 사업개요

□ 사업규모

구 분	유형1 (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 사업)	유형2 (체육대회)
사업기간	2025년 1월 ~ 12월 (총 1년간)	
장 소	경기도 내	
자격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 6호 가, 나, 다에 해당하는 단체1) 시·군체육회2) 경기도종목단체3) 체육활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 6호 나, 다에 해당하는 단체1) 경기도종목단체2) 시·군종목단체3)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

※ 동일사업으로 유형1, 유형2 중복신청 불가

※ (유형1)시·군종목단체는 시·군체육회 또는 도종목단체를 통해 신청

※ 읍면동체육회는 시·군체육회 통해서만 신청 가능

※ 장애인 체육단체는 장애인체육회로 참가 문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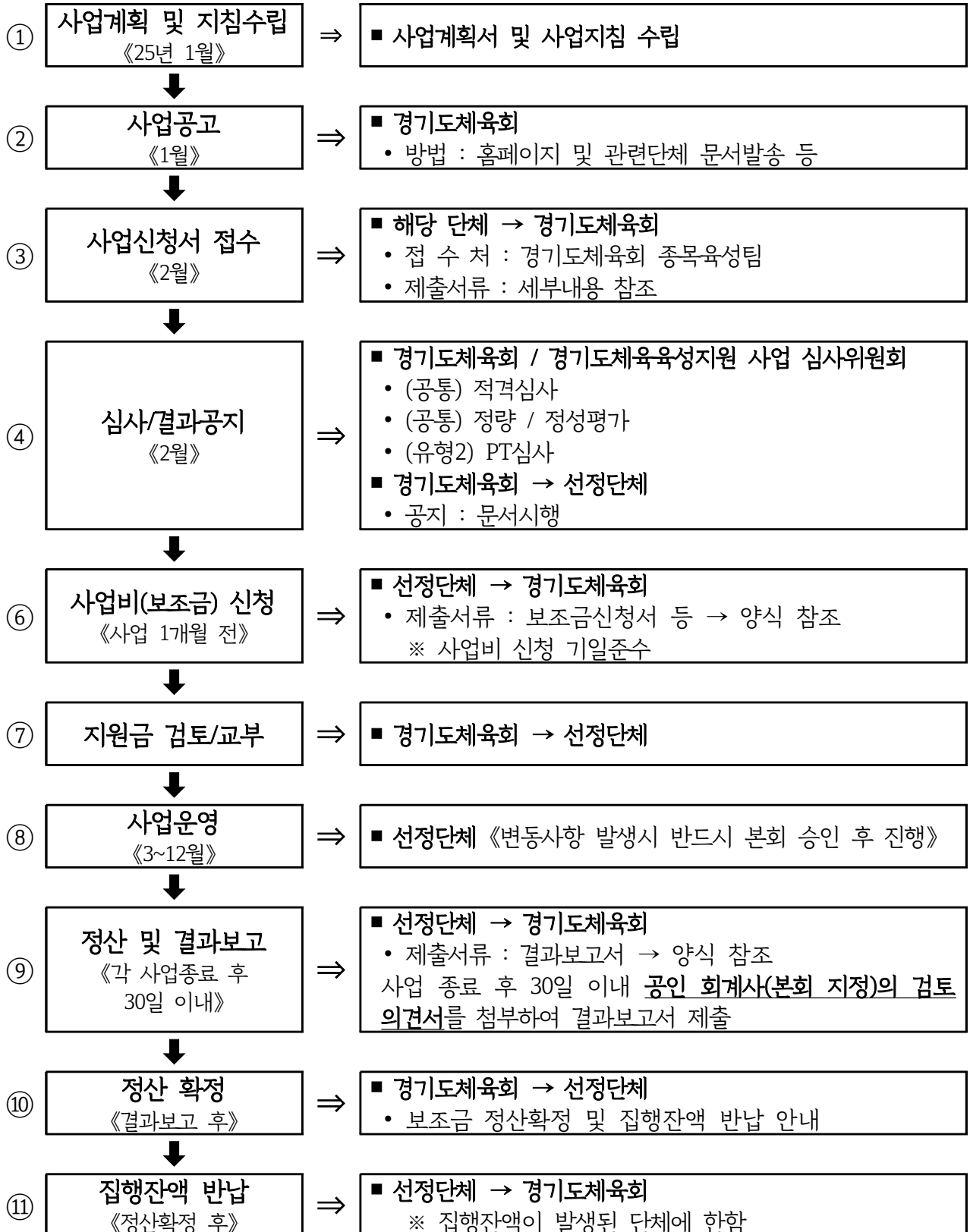
- 사업내용 : 다양한 체육활동 사업 등에 대한 공모·심사를 통한 사업비 지원
- 지원규모 :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(단체별 신청금액 대비 60~100% 지원)
- 지원방법 : 선정단체 공금계좌(법인통장)에 입금[개인계좌 입금 불가]

□ 공모유형

구 분	사업유형1 (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 사업)	사업유형2 (체육대회 지원사업)
공모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 6호 가, 나, 다에 해당하는 단체 1) 시·군체육회 2) 경기도종목단체 3) 체육활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 6호 나, 다에 해당하는 단체 1) 경기도종목단체 2) 시·군종목단체 3)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
지원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전문체육 육성지원 ②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③ 배려계층 체육용품지원(10개소 이내) ④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 지원 ⑤ 외국인주민 체육 프로그램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도단위 체육행사 ② 전국단위 체육행사 ③ 국제단위 체육행사
지원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~⑤ 사업별 30,000천원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회당 50,000천원 이내 ② 대회당 100,000천원 이내 ③ 대회당 150,000천원 이내
공모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개 사업, 1개 유형으로 신청 • 단체별 공모신청은 10건 이내로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개 사업, 1개 유형으로 신청 • 단체별 공모신청은 1건으로 제한
제한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회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• 보조금 횡령, 유용, 징계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법인 또는 단체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• 신청서 제출 법인(단체)과 실제 운영 법인(단체)이 다를 경우 선정 심사 제외 • 학술 및 연구사업, 임·직원 대상 강습 및 체육대회, 체육시설 관련사업 • 사업대상이 장애인에 국한한 사업 • 자체 스포츠클럽, 지역친목행사, 읍면동체육행사, 홍보캠페인 관련사업 • 2024년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 정산 미완료 단체의 사업 	

3

진행절차(안)



※ 사업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

4

공모내용

□ 사업공고 : 본회 홈페이지, 관련단체 문서발송 등

□ 신청방법

○ 공통서류

- ①공문 ②사업신청서 ③사업계획서 ④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- ⑤공모참가 서약서 ⑥금액변동 확인서

※ 제출자료 관련서식 :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

※ ①공문 누락 시, 접수 개시가 불가하므로 필히 첨부 요망(미비 서류 관련 안내 없음)

○ 유형2 추가서류 : ⑦단체소개서 ⑧동일(유사) 사업 수행실적표

○ 제출방법

- 공모기간 : 2025. 1. 24.(금) ~ 2. 10.(월) / 18일간
- 제출기간 : 2025. 2. 03.(월) ~ 2. 10.(월) 18:00까지 / 8일간
- 제출방법 : 전자문서, 이메일 중 택1
- 제출처 :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팀(☎031-250-0452, 0455)

이메일 : kyj1206@ggsc.or.kr / hyunac@ggsc.or.kr 중 택1

※ 사업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

※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 시 심의 제외(미비 서류 관련 안내 없음)

- 결과발표 : 2025년 2~3월 중 예정, 선정단체만 개별통보 예정

□ 기타사항

-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,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 제출
- 허위 사실 기재,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, 선정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보조금 환수 조치
- 사업 취소신청 : 공문으로만 신청 가능
 - ※ 취소 미신청 시, 26년 경기도체육육성지원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
 - ※ 사업 취소 결정 시, 사업담당자 유선 문의

5

심사위원회 운영(안)

□ 심사위원 구성 : 타 기관 추천을 통한 외부 인사로 구성

□ 심사기준

○ 경기도내 소재지를 둔 신청단체로 한다.

○ 사업개최 장소는 경기도내로 하며 경기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규모 및 사업지원 필요성 및 현실성,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

○ 기타 지역 및 종목별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

○ 심사위원별 사업신청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

○ 각 위원 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정

*** 2단계 정량, 정성 평가 시 유형1은 50점 이하, 유형2는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처리함**

□ 심사방법

○ (공통) 적격심사

-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으로 지원여부 판단

○ (공통) 정량, 정성평가

- 필요시 원활한 심사를 위한 제안자 질의답변 *** 진행시 별도 안내**

- 개별평가에 따른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

- 정량평가 :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, 예산편성, 안전관리사항 여부 등

- 정성평가 : 사업내용, 모집·홍보, 예산편성 적정성 및 효율성

○ (유형2) PT심사(정성평가)

- 심사위원평가에 따른 지원액 결정(PT 발표 점수에 따른 예산 배정)

○ (공통) 결과공지

- 발표일정 : 심사종료 후 7일 이내

- 발표방법 : 선정단체 문서 발송

□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

- ‘사업계획서 작성 예시’를 참고하여 유형별 사업개요 및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
- 선수명단, 대회 모집요강 등의 사항은 별첨 가능하며, 자유 양식으로 제출
- 「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 2」 의거, 참가자 1천명 이상인 경우,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지자체 유관 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신고 필수
- 담당자의 연락처는 항시 연락이 가능한 사업 담당 실무자 연락처 기재
- 사업 접수 후, 신청한 사업유형과 사업내용은 변경 불가능
 - ※ (예시) 유형1 → 유형2 / 유형1-① → 유형1-③

□ 예산편성 유의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준수
- 보조금 교부에 따른 “공직선거법” 및 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” 등에 위배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항목 지원 불가
- 사업 선정 후, 편성 불가 혹은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본회와 협의
-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
-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체비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
- 자체비 예산은 실제 집행가능 금액으로 편성하고,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
-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체비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
-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,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
 - ⇒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 불가
- 편성불가 :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
 - 단체운영 경비 :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비, 공과금 등
 - 자본적 경비 : 시설비, 시설부대비, 설비비, 수선비, 자산취득비 등
 - 현금성 경비 : 이웃돕기성금, 진료비 등
 - 차량 유지관리비 : 수리비, 보험료, 유류비 등
 - 기념품(참가자 전원 수령 포함), 시상금(시상품 포함), 임원피복비, 대회출전비, 국제대회 참가자, 관계자의 항공료 등, 상품권, 주류, 도서구입, 개인경비(주유)
- 유형1 전문체육 육성지원(①)의 경우 지원대상 증빙자료 필수(선수등록증 등)
- 유형1 프로그램(②), 행사(④)의 경우 체육용품은 선정액의 40% 이내 편성
- 유형2 공고료 및 광고료는 선정액의 15% 이내 편성
- ‘경기도, 경기도체육회 재정지원’ 의무 표기 (각종 인쇄물, 홍보물 등)

□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

사업유형		참 고 사 항
전문체육 육성지원	용품지원	대상모집, 선정기준, 선수명단/입상현황(창단일 포함), 지원방안, 활용계획, 홍보 등
	전지훈련	지도자연락처, 선수명단/입상현황(창단일 포함), 일자별(시간별) 계획 등
	지도자교육	참가자현황, 일자/시간별 계획, 강사프로필, 교육내용, 안전대책, 홍보 등
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	교실운영	운영방법(시간, 장소, 지도 횟수, 참여 인원, 용품 내역), 지도자 등 운영인력 현황
	강 습 회	참가자모집, 프로그램 내용, 안전대책, 홍보 등
	캠 프	참가자현황, 일자/시간별 계획, 강사 프로필, 교육내용, 안전대책, 홍보 등
배려계층 용품지원	용품지원	대상 모집, 선정 기준, 배려계층현황, 지원방안, 물품관리/활용계획, 홍보 등
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지원	체육 관련 행사	대회 종별(세부 종별), 행사일정 / 개 · 폐회식순, 시상계획, 참가자모집, 용품현황, 대회규정(종별, 참가자격, 경기방법, 기타), 운영인력 현황(심판, 진행 등), 준비사항, 안전대책, 홍보 등
	각종대회	안전대책, 홍보 등
외국인주민 체육프로그램지원	교실운영	운영방법(시간, 장소, 지도 횟수, 참여 인원, 용품 내역), 지도자 등 운영인력 현황
	강 습 회	참가자모집, 프로그램 내용, 안전대책, 홍보 등
	체육대회, 관련 행사	대회 · 행사 종별(세부 종별) 일정 / 개회 · 폐회식순, 시상계획, 참가자모집, 용품 현황, 대회규정(종별, 참가자격, 경기방법, 기타), 운영인력 현황(심판, 진행 등), 준비사항, 안전대책, 홍보 등

※ 사업유형별 목적, 필요성, 기대효과를 명확히 기재

※ 세부추진 계획은 해당 사업유형별로 참고사항 외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

□ 보조금 예산편성 비목 ☞ 사업계획서 ‘비목별 산출내역’ 수립시 단가 등 적용

비 목	편 성 기 준	
	세 목	단 가
인건비	<p>□ 인건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심판, 강사, 운영요원(기타인력 등) 수당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동일인 월125,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 (기타소득 8.8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판비 : 종목단체별 규정 적용 지급 (체육단체 자체 규정 없을 시 중앙경기 단체 규정 적용) - 강사비: 1인 1일 120,000원 이내 편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* 강사비 자체 규정 있을 시 본회 협의 必 - 운영요원(기타인력 등) : 1인 1일 80,000원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격증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 보조 인력 * 자격증 소지로 운영요원 인건비 상향 불가
운영비	<p>□ 일반수용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내 · 홍보물 등 제작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 - 명패, 상패 등의 제작비 ○ 물품구입(소모성 물품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- 훈련, 지원사업에 필요한 체육용품 ○ 공고료 및 광고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(TV · 신문 · 잡지, 인터넷 광고 등) ○ 회의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논의를 위한 회의자료 준비, 회의 장소 대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내 · 홍보물 등 제작비: 단가 시장시세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경기도 재정지원 문구 의무 표기 - 물품구입(소모성 물품 포함): 단가 시장시세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체복은 50,000원 이내 편성 * 유형 1-① 개인 훈련용품 지급 시 선수 서명 필수 - 공고료 및 광고료: 단가 시장시세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유형2 광고비용은 선정금액의 15% 이내 편성 - 회의비: 총 1회, 300,000원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식대 사용 시 불인정
	<p>□ 임차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 ○ 버스, 구급차의 차량 임차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차료: 임차비 실비 적용 - 임차계약서 내 사용기간 명시
	<p>□ 일반용역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용,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역업체 선정 시, 수의계약 기준 반드시 참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업체 선정 시, 공개입찰을 통한 진행이 원칙이나, 2천만원(세금 별도)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 가능 *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(세금별도) 까지 수의계약 가능
여비	<p>□ 숙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회기간 중 운영 인력 숙박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 1박 70,000원 이내 실비적용
	<p>□ 식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회기간 중 운영 인력 식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끼 8,000원 / 1일 25,00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류비 지출 불가 * 유형 1-② 캠프, 강습회 한하여 참가자 식비 편성 가능
보험비	<p>□ 보험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포츠안전재단 가입 권장